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17

3. 정정 사유
- 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및 위험등급(2 → 1등급)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신탁 명칭	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	삼성클래식**KOSPI200**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
표지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**2등급**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**1등급**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**업데이트**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	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	삼성클래식**KOSPI200**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정 정 전</th><th>정 정 후</th></tr>
<tr><td>의 명칭</td><td></td><td>제1호[주식]</td></tr>
<tr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td><td><table><tr><td>변경시행일</td><td>변경 사항</td></tr><tr><td>(추 가)</td><td>(추 가)</td></tr></table></td><td><table><tr><td>변경시행일</td><td>변경 사항</td></tr><tr><td>2026.11.20</td><td>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 → 삼성클래식KOSPI200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제1호[주식]), 투자위험등급 변경(2등급(높은 위험) →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5. 운용전문인력</td><td>–</td><td>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td><td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–

라. 전환형 구조
–</td><td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그림 업데이트

라. 전환형 구조
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td><td>가. 투자대상
(1)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
<table><tr><td>투자대상</td><td>투자대상 세부설명</td></tr><tr><td>주식</td><td>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(이하 “ 주식” 이라 한다)</td></tr></table>※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,2),3),4),6),7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.
① ~ ④ (생 략)
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2),3),4),6),7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※채권의 신용등급이 2)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나. 투자 제한
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투자제한의 내용</td></tr><tr><td>동일종목투자</td><td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,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</td></tr></table></td><td>가. 투자대상
(1)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
<table><tr><td>투자대상</td><td>투자대상 세부설명</td></tr><tr><td>주식</td><td>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, 이하 “ 주식” 이라 한다)</td></tr></table>※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,2),3),4),5),6),7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다만,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.
① ~ ④ (생 략)
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2),3),4),5),6),7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※위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.

나. 투자 제한
(1)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투자제한의 내용</td></tr><tr><td>동일종목투자</td><td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**정부**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**해당),** 파생결합증권(2011년2월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**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(이하 이 목에서 " 금융기관" 이라 한다)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은행·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,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)**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**(추 가)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**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**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(이하 생략)		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**국가**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**해당한다)**, 파생결합증권(2011년2월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**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**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**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,**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**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**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(현행과 같음)
	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	**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	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	**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(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),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**
	후순위채권에 투자	**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**	**(삭 제)**	**(삭 제)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**2등급**에 해당되는 **높은 위험**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39.69%** 입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**1등급**에 해당되는 **매우 높은 위험**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**95.39%** 입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**업데이트**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**업데이트**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**업데이트**